

국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3. 25(금) 10:00

제235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소관)



행정재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경위

- 가. 의안번호 : 제2182호
- 나. 제 출 자 : 금천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22. 3. 17.
- 라. 회부일자 : 2022. 3. 17.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1.13.시행)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가 제도화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인수위원회의 구성 목적 및 용어의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당선인의 권한과 예우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안 제5조부터 제10조)
- 라. 구 직원의 파견 및 예산·활동 등 지원 (안 제11조부터 제13조)
- 마. 위원회 준수사항 등 (안 제14조부터 제17조)

4. 참고사항

- 가. 관련법령 : 「지방자치법」 제105조
-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 다. 합의기관 : 해당 없음
- 라.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 2) 입법예고(2022. 2. 22. ~ 2022. 3. 14.) 결과 : 의견 없음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별도 첨부
- 4) 규제사전심사 : 원안동의(기획예산과)
- 5)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민원감사담당관)
- 6)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여성가족과)

5. 검토의견

가. 제정 취지 검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1. 1. 12. 공포, 2022. 1. 13. 시행)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 제도화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구청장직 인수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구청장이 제출하였음.

나. 주요 제정 내용

-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기술하였고
-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당선인의 권한과 예우
 - 1) (권한) 당선인은 구청장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가짐
 - 2) (예우) 당선인에게 사무실 제공 등의 지원
-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 1) (존속기간)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함
 - 2)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
 - 3)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
 - 4) (의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구 직원의 파견 및 예산·활동 등 지원

- 1) (사무직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 파견 요청
 - 2) (예산 등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지원
 - 3) (고려사항) 지원, 협조, 파견에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 고려
 - 4) (수당 등)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지급
- 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는 위원회 준수사항 등
- 1) (준수사항) 비밀누설 및 직권남용 금지
 - 2) (활동보고서)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날로부터 30일 이내 활동보고서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인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그동안, 구청장직 인수위원회가 법적근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에 따라 운영하던 사무인계를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 당선인에 대한 임기 개시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인수를 통해 구정공백을 최소화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법적근거가 명확하고 상위법령에 부합한 적절한 제정안으로 사료됨

붙임 : 관련 법령 1부.

관 련 법 령

【지방자치법】

- 제105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①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당선인”이라 한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 ② 당선인을 보좌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인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인수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 ④ 인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 ⑤ 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으로 구성한다.
1. 시·도: 20명 이내
 2. 시·군 및 자치구: 15명 이내
- ⑥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⑦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
- ⑧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⑨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직선거법】

제14조(임기개시)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개시된다. 다만, 전임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가 만료된 후에 실시하는 선거와 제30조(地方自治團體의 廢置·分合시의 選舉 등)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새로 선거를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당선일 결정된 때부터 개시되며 전임자 또는 같은 종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9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당해 지방의회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② 삭제

③ 제187조제4항 및 제18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